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 개정(안)

(외부의견조회용)



2019. 8.

- 주 요 개 정 내 용 -

- (1) 2020.01.01.일자 시행사항(건조일 기준)
 - MSC Res.407(96) 반영 : 동등 소화장치의 인정
 - IACS UR D 11 반영 : 편제 수정
 - 동등효력: 선급기술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등효력에 대한 요건을 통일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1 장 일반사항 제 1 절 일반사항	제 1 장 일반사항	
101.부터 103. 〈생략〉 104 동등호력 및 신기술	제 1 절 일반사항 101.부터 103. 〈생략〉	
1. 이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체구조, 의장 배치 및 치수를 갖는 구조물이라도 우리 선급이 이 규칙에 적합하다는 것과 동등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간준한다. 2.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적합하고 당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근간으로 신기술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 우리 선급이 승인하는 경우 부력, 승강장치, 구조배치, 기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신기술을 적용한 구조물을 등록할 수 있다.	104. 동등효력 이 규칙에 만족하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는 대체설계 및 신기술의 동 등효력에 대해서는 선급 및 강선규칙 1편 1장 104.를 따른다	- 선급기술규칙에서 사용하는 동등효력에 대한 요건을 통일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9 장 방화구조, 탈출설비 및 소화장치	제 9 장 방화구조, 탈출설비 및 소화장치	
제 1 절부터 제 3 절 <생략>	제 1 절부터 제 3 절 <생략>	
제 4 절 헬리콥터 설비용 소화장치	제 4 절 헬리콥터 설비용 소화장치	
401. 일반	401. 일반	
 402. 헬리콥터 갑판 및 연료보급설비 1. 호스 및 노즐 : 승인된 분사 및 분무겸용 노즐(방사기 포함)과 헬리 콥터 갑판의 어느 곳에도 닿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호스를 각각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이동식 소화기 : 2개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들의 총용량은 45 kg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각각의 용량은 9 kg 이상이어야 한다. 3. 보조 소화장치 : 총용량이 18 kg 이상의 CO₂ 소화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보조 소화장치는 주소화장치와 동시에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소화기 중 적어도 하나는 헬리콥터가 갑판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헬리콥터의 기관구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이 보조 소화장치는 적절한 호스 및 부속품을 비치한 소화전으로 대신할수 있다. 	 402. 소화장치 1. 호스 및 노즐 : 승인된 분사 및 분무겸용 노즐(방사기 포함)과 헬라 콥터 갑판의 어느 곳에도 닿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호스를 각각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1. 헬리콥터 갑판에 근접하여 다음의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헬리 콥터 갑판의 접근수단 근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이동식 소화기 (가) 주소화장치 : 2개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들의 총용량은 45 kg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각각의 용량은 9 kg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보조소화장치 : 총용량이 18 kg 이상의 CO₂ 소화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소화장치는 주소화장치와 동시에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소화기 중 적어도 하나는 헬리콥터가 갑판의 어느곳에 있더라도 헬리콥터의 기관구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장치하여야 한다. 이 보조 소화장치는 적절한 호스 및 부속품을 비치한 소화전으로 대신할 수 있다. 	 - 1항 (2)호 (나)로 이동함 함 - MODU Code 9.17.4 - 편제 수정 (UR D11.4.1): 분말소화기와 CO2 소화기를 이동식 소화기의 하부조항으로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 ### ### ### ### ### ### ### ### ##	(2) 고정식 소화장치 (가) 고정식 포말소화장치 : (a) 모니터(monitor) 또는 포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소화지관으로 된 적절한 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능력은 6 L/m²-min(수성막포(Aqueous Film Forming Foam) 또는 불화단백포(Film Forming Fluoroprotein Foam)의 경우에는 4.1 L/m²-min)이상의 비율로 적어도 5분간 보호구역(헬리 콥터의 주회전날개(main rotor)에서 꼬리회전날개(tail rotor) 까지의 회전원주외곽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면적)에 포말용액을 분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소화장치의 기동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최소발포 비율에서의 포말방출이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소화주관의 사용 중에도 포말소화장치를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포말용액은 해수와 함께 사용상 적합하여야 하고, 국제해사 기구에서 허용한 것(국제민간항공기구 공항실무지침, 제1편 - 구조 및 소화, 제8편-소화제 특성, 제8.1.5항 - 포말특성 표 8-1 레벨 'B'를 참조)보다 나은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고정식 소화수장치 : 승인된 분사 및 분무겸용 노즐과 헬리콥터 갑판의 어느 곳에도 닿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호스를 각각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3) (2)호 (가)의 요건을 대신하여 FSS Code의 요건에 적합한 포말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부터 5. 〈현행과 동일〉	대성 사 규 - 편제 수정 (UR D11.4.1): 고정식 포말소화장치와 고정식 소화수장치를 고정식 소화장치의 하부조항으로 함. - 1항으로부터 이동함. <msc 407(96)="" res.=""> - MODU Code 9.17.4.6</msc>

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 개정(안)

(제2장 선급등록 및 검사)

(외부의견 조회용)



- 주요개정내용-

- (1) 2020.01.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IACS UR Z15 (Rev.3 May 2019) 개정사항 반영 - CoC(지적사항)으로 통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2 장 선급등록 및 검사 제 1 절 일반사항	제 2 장 선 급등록 및 검사 제 1 절 일반사항	
101. 일반사항〈생략〉	101. 일반사항 〈현행과 동일〉	
102. 용어의 정의 1.~ 12. 〈생략〉 13.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prompt and thorough repair)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라 함은 당해 검사 시 완료하는 영구수리로서, 검 사원이 만족하고 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선급유지조건 또는 지적사항 도 남기지 않는 수리를 말한다. 14. ~ 16. 〈생략〉	102. 용어의 정의 1.~ 12. 〈현행과 동일〉 13.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prompt and thorough repair)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라 함은 당해 검사 시 완료하는 영구수리로서, 검 사원이 만족하고 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u>지적사항</u> 도 남기지 않는 수리 를 말한다. 14. ~ 16. 〈현행과 동일〉	- 용어 통일
1. ~ 2. 〈생략〉 3. 1항에 명시된 선체구조에서 발견된 손상이 격리된 것이고 선체구조의 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국부적인 것인 경우 검사원은 국제선 급연합회(IACS)의 절차요건(PR) No.35 (Procedure for Imposing and Clearing Recommendation/Condition of Class)에 따라 풍우밀 또는 수밀보전성을 다시 확보하기에 적합한 임시수리를 하고 기한을 정하여 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103. 수리 1. ~ 2. 〈현행과 동일〉 3. 1항에 명시된 선체구조에서 발견된 손상이 격리된 것이고 선체구조의 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국부적인 것인 경우 검사원은 국제선 급연합회(IACS)의 절차요건(PR) No.35 (Procedure for Imposing and Clearing Condition of Class)에 따라 풍우밀 또는 수밀보전성을 다시 확보하기에 적합한 임시수리를 하고 기한을 정하여 <u>지적사항</u> 을 지정할 수 있다.	- IACS UR Z15(Rev.3 May 2019)의 1.3.3을 반영함.